

[2025년 신진작가 전시 지원] 사업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신진작가 지원 및 지역 미술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<2025년 신진작가 전시 지원>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에 참여할 단체(기업)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■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5 신진작가 전시 지원
- 공고기간 : 2025. 2. 5.(수) ~ 2025. 3. 26.(수) 16:00 까지
- 지원기간 : 4월 ~ 11월 (전시기간 : '2025년 9~10월)
-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각예술기획사, 비엔날레 등 5개 단체
- 지원규모 : 총 500백만원 (각 비엔날레 개최지 1개씩, 100백만원 정액 지급)
- 지원내용 : 2025년 개최 국내 비엔날레 전시공간 내/외·인근 청년(지역) 작가 전시 지원

■ 세부내용

- (신청대상) 국내 개최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내외부 공간에 청년 작가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

<지원 가능>

<지원가능 단체>

- 최근 3년('22~'24년) 신청주체가 주관한 시각예술 전시개최 실적 보유
-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

<지원가능 전시>

- 시각예술(미술) 전시에 한정하며, 작가(국내외)/작품(장르) 등 제한 없음, 단 전시기간 25년 9~10월 필수
-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15명 이상 참여 시 지원 가능
- 전시장소는 *국내 비엔날레 공간(내외부 및 인근)이며, 전용면적 500㎡(약 150평) 이상 시 지원 가능
*비엔날레 : 청주공예비엔날레, 부산바다미술제, 대구사진비엔날레, 광주디자인비엔날레,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, 전북서예비엔날레 등

우대사항

- (단체) 비엔날레 협력(예산, 공간, 프로그램 등) 시
- (전시) 비엔날레 *개최지 작가 5명 이상 지원 시 *(개최지 작가 : 사·군·구 단위)

<지원 불가>

<지원불가 단체> * 공모요강 5P 지원불가 참고 *

-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2(보조사업 수행배제 등)에 해당하는 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 제7조(보조사업 선정 기준), 제10조(보조금 교부금 조건) 제1항 제1호 바~아목에 해당하는 기관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기관
-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 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 등

<지원불가 전시>

- 해외 비엔날레 연계 전시,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

<지원 조건>

- (필수) 총괄기획자 선임 *지원단체 내부 총괄기획자 선임 가능
- (필수) 설치·철수 및 휴관일 제외 2달 이상 전시개최 (전시기간 25년 9~10월 포함 필수)
- (필수) 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 최소 20회 이상 운영, 입장료 무료
- (관장) 지역예술인(작가·기획자) 연계프로그램 운영

전시공간	• '2025년 개최 비엔날레 내·외부, *인근 공간(*비엔날레와 협조된 인근 연계 공간)	
	총정	청주 공예 비엔날레 (9.4~11.2)
	경상	부산 바다미술제 (9.27~11.2) 대구 사진비엔날레 (9.18~11.16)
	전라	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(기간 미정)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(8.30~10.31.) 전북 서예비엔날레 (9.26~10.31.)
*각 비엔날레별 전시 기간은 별도 될 수 있음		
프로그램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가 15인 이상, 단체전 개최 • 부대프로그램 및 관객참여 프로그램 운영 (아티스트 토크, 네트워킹, 교육 등) 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개 단체 (각 비엔날레 개최지 1개씩, 100백만원 정액 지급) • 전시/행사를 위한 직접 경비 (운송/설치/철거, 임차비, 용역비 등) • 작가사례비, 홍보마케팅, 외부 기획자 사례비(10% 미만) 	

■ 공모 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~2025년 3월 26일(수), 16:00까지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*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절대 불가, e나라도움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(1670-9595)
- (제출서류) 제출 완료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수정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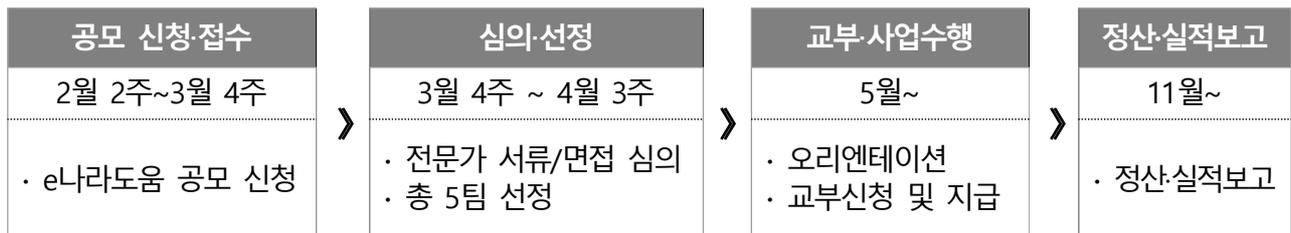
순번	제출서류 및 파일형식	방법
1	•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e나라도움 작성·제출
2	•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(양식/hwp)	e나라도움 첨부
	• 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
	• 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
	• 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• 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
3	• (해당자) 주요실적, 전시장소, 후원·협력 증빙 사본 (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)	
4	•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(jpg/pdf)	
(참고) 별도제출	• PT 발표자료(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)	

■ 심사 및 결과발표

구분		내용	
심사	방법	• 외부 전문 심의위원 5인 내외 구성, 서류/면접심사 진행	
	기준	항목(배점)	세부내용
		신청주체의 전문성·활동실적(30)	•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 •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
		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(40)	•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• 사업내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개발계획의 충실성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계획의 구체성
	사업계획의 기대도·파급효과(30)	•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•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	
일정	행정심의 2025년 3월 4주~	서류심의/발표(15배수 내외) 2025년 4월 2주~	면접(PT)심의/최종 결과발표 2025년 4월 4주 이내
	필수서류 등 결격확인	심의위원 서류평가 수행	PT발표 · 인터뷰, 예산심의 ※ 발표는 총괄기획자가 수행 결과 :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, 개별안내

※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■ 추진절차



■ 문의 및 유의사항

문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 시각유통팀 (02-2098-2919 / nart@gokams.or.kr) - 유선 문의는 평일(월~금) 10:00~16:00 중 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) - e나라도움 관련(시스템 및 지원신청 전반)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연락 : 1670-9595
의무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•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, 작가 및 출품작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 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2회 이상 분할 교부가 원칙 •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,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 •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
•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•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

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
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
- e나라도움 교육(온라인_이론 1회 4시간, 오프라인_실습 2회 6시간) 수료증 제출
 -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
 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
 -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, 작가사례비(아티스트피)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 -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(22.2)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 구분
 - 매년 '시각예술실태조사 (*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응답필수
 -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
 - 「예술인고용보험제도」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
- ※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18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* '문화예술용역'이란?

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-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 필수
-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 · 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
-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
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
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
 *** 사업기간 종료일은 전시 운영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됨

-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 -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 -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
 - 지원 전시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(이미지 포함) 제출 필수 (제출된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'www.k-artmarket.kr'에 게재될 수 있음)
 -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, 적극 협조
 -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
- 지원 불가 단체**
-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
 -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
 -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
 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 -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
 - 기금모음행사(펀드레이징)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
 -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
 - 지방자치단체
 -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
 -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 -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
 -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
 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 불가 항목**
-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및 전시장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
 -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
 - 부대비용 :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
 -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
 -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
 -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